

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일
신 고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	영업소 소재지	영업소 전화번호		
	영업소 명칭(상호)	영업의 종류		
테마파크시설 종 수	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	종		
	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(예정)일	년	월	일
단 기 영 업	영업기간(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)			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
		「관광진흥법」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

유의사항

-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.
-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.
 - 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
 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(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)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 고 인

(서명 또는 인)

※법인인 경우

주민등록번호

임 원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

임 원

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

임 원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정	→	신고증 발급
---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---

신고인

처 리 기 관
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

신청인 제출서류	1.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(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) 2.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. 「관광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. 안전점검 계획 나. 비상연락체계 다. 비상 시 조치계획 라. 안전요원 배치계획(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마.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) 3. 건축물대장 4. 토지이용계획확인서